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저축은행 부실 사태와 감독당국의 대응

□ 금융위는 지난달 삼화저축은행에 이어 2월 17일 임시회의를 통해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6개월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함.

○ 대전저축은행은 지속적 예금인출로 인해 유동성이 부족한 실정이며, 부산저축은행은 2010년 12월말 기준 자기자본이 완전 잠식된 상태이고 자회사인 대전저축은행의 영업이 정지될 경우 예금지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함.

– 부산저축은행은 지난해 6월에 BIS 자기자본비율이 8.33%로 금감원 권고비율인 5.0% 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과도한 PF대출 비중으로 인해 이후 자본잠식 사태에 이른 것으로 분석됨.

○ 향후 추가적 검사를 통해 대전저축은행과 부산저축은행이 경영상태가 건전하고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영업재개가 가능하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될 예정임.

○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예금자보호법을 기초로 예금자 1인당 원리금 기준 5천만원 이하의 예금은 전액 보호하고, 기존 여신거래자의 경우 영업정지 기간에도 평소와 같이 만기 도래 어음 및 대출금의 기일 연장은 가능하도록 조치함.

□ 저축은행 부실 사태의 확산 우려가 다른 저축은행의 예금인출까지 초래하고 있으며, 향후 저축은행 부실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.

○ 저축은행의 부실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자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으며, 실제로 대전저축은행과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사태가 다른 지역의 저축은행에도 영향을 미쳐 예금 인출 사태가 발생함.

○ 향후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융위의 공동계정을 통한 저축은행 구조조정 재원 조달 방안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일부 저축은행의 부실을 타금융기관이 부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피력함.

(부산 및 대전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 등, 금감원 등, 2/17)